

중국의 WTO · TRIMs 협정 위반 분쟁사태에 관한 연구

- 자동차 부품 사례를 중심으로 -

A Case Study on the Violation of the WTO-TRIMs Agreement in the China

- Focusing on the Auto Parts Case-

김종훈(Jong-Hun Kim)

중국 대외경제무역대학 WTO 연구원 박사후과정

목 차

I. 서 론	V. 결 론
II. WTO·TRIMs 협정	참고문헌
III. 중국의 TRIMs 관련 규정의 변화	Abstract
IV. TRIMs 협정 위반 분쟁사례 - 자동차 부품	

국문초록

무역관련투자조치(TRIMs)협정은 산업정책의 일환으로서 어느 국가가 외국 투자자에게 적용하는 국내규제와 관련된 규칙이다. 이 협정은 WTO의 모든 가입국이 합의한 내용이다. 이 협정은 국내제품에 유리한 법, 정책 또는 행정적 규정을 적용하는 것을 금지한다. 이것은 국내적으로 지역산업을 보호하는 방법으로서 제품을 생산한 것을 사용하는 기업을 조력하기 위한 정부의 인센티브도 포함한다. 이 협정은 WTO 체제 내에서 유일한 제한조치이다. 지역의 무역균형규칙과 같은 정책은 국내산업의 이익 증진과 현재는 경쟁적으로 제한하는 기업관행은 금지되어 있지만, 과거에는 활용되어 왔다.

여러 면에서 WTO-TRIMs 협정은 서비스 등에 관한 WTO 협정보다 그다지 중요한 협정은 아니다. TRIMs 협정은 전혀 새로운 규칙이 아니며 기존의 GATT 규정에서 정한 것을 언급하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GATT 규정과는 달리 내국민대우에 관해서는 강경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WTO-TRIMs 협정은 자동차 부품 등에 관해서는 광범위한 효과를 가지게 되었다. 한편 중국은 2001년 뒤늦게 WTO 회원국이 되어 한때 수입부품에 대한 고율의 관세를 부과한 조치는 고율의 관세를 회피하려는 자동차 부품 수입업자들을 규제하기 위한 것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중국의 WTO · TRIMs 협정 위반 분쟁사태에 대해 중국의 자동차 부품 사례를 중심으로 분석하고 있다.

주제어 : 중국, WTO, 무역관련투자조치, 내국민대우, 자동차 부품

I. 서론

무역관련투자조치(Trade Related Investment Measure; TRIMs)는 외국인 직접투자와 관련하여 무역의 흐름을 제한하거나 왜곡시킬 수 있는 규제나 유인을 말한다. GATT 차원에서 국제투자문제가 본격적으로 거론된 것은 1980년대 중반 우루과이라운드(이하 UR협상이라 칭함)에서부터이다. 즉, 무역의 흐름을 제한 또는 왜곡할 수 있는 투자조치 규제를 규율하기 위한 협상을 개시한다는 내용이 UR협상의 출범을 알린 1896년 폰타텔에스테 선언에 포함되었다.¹⁾

그러나 UR협상에서 타결된 TRIMs 협정은 상품무역에 제한적 또는 왜곡효과를 미치는 투자조치에 대한 규제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또한 본 협정에 따라 회원국은 협정에 위배되는 자국의 모든 투자조치를 WTO 발효 후 일정 기간내에 폐지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한편 개도국은 해당 조치를 GATT의 규정으로도 다룰 수 있으므로 사안별 검토를 주장한 반면, 선진국은 기존의 규정과 함께 별도의 법규를 제정하는 한편 간접적인 효과를 갖는 조치와 기존의 투자조치까지 규제대상으로 하자고 맞섰다.²⁾

결국 UR 교섭과정에서 개도국의 입장이 반영되어 당초의 안보다 느슨한 형태의 규범으로 결론이 도출되었다.³⁾ TRIMs 협정은 상품무역에 관련되는 조치에만 적용되고 서비스교역관련 투자조치나 무역제한 및 왜곡효과와 무관한 일반적 투자조치는 이 협정에서 제외되었다.

중국은 국제경제 질서에서 주도적 지위의 확보, 확대되는 통상마찰의 효과적인 해결과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을 목표로 1986년부터 GATT/WTO 가입을 위하여 오랜시간 협상을 진행하였다. 기나긴 협상 끝에 2001년 11월 10일카타르 도하에서 열린 WTO 각료회의에서 회원국의 만장일치로 WTO 가입이 결정되었다.

WTO 가입 이후 중국은 지난 10년간 수출 6위에서 1위국으로 부상하였으며 교역액은 가입 당시의 2001년과 비교하여 2010년은 5.8배인 2조 9728억 달러에 달한다. 2009년 금융위기 당시 전세계 수입규모가 24%나 축소되었으나 중국은 11.2%에 감소하는 것에 그쳤으며 2001년 세계 6위이던 수입규모가 2010년 기준 세계 2위로 올라섰으며 미국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시장으로 자리매김 했다.⁴⁾

외국인 투자유치와 관련하여 WTO 가입 이후 10년간 중국의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규모는

1) 여경송, "TRIMs 협의연구", 「법학논평」, 제26호, 2001, p. 96.

2) M. Mashayekhi & M. Gibbs, "Lesson from the Uruguay round Negotiation in Investment", Journal of World Trade, Vol.33, 1999, pp. 7-10.

3) GATT 1994 art. III.

4) 구체적인 자료는 중국 상무부 홈페이지(<http://www.mofcom.gov.cn/>) 참조.

연평균 9.5%씩 성장하여 2001년 세계 6위에서 2010년 기준 2위를 기록하였으며 중진국 중에서 18년 연속 외국인투자유치 규모 1위를 기록하고 있다. 2010년 기준 중국의 외국인투자 유치규모는 1088억 달러로 100억 달러를 돌파하였으며 이는 2001년보다 무려 2.32배가 증가한 수치이다.⁵⁾

이러한 무역투자 방면에 있어서 WTO 규칙과의 부합과 중국정부의 대외적 수락내용에 근거하여 3자기업법⁶⁾을 개정하였다. 이러한 3자기업법의 개정은 중국이 사회주의시장경제체제의 확립과 WTO 가입과 WTO-TRIMs 협정 및 중국의 가입의정서 등에 나타난 대외적 수락내용과 불일치하는 규정들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평가된다.⁷⁾ 그러나 가입 10년이 넘은 현 시점에서 아직도 불합리한 제도나 정책이 존재하고 있어 관련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WTO에서 TRIMs 협정과 관련된 문제는 주로 자동차산업과 관련하여 제기되고 있으며 그만큼 자동차 사건은 TRIMs 협정에서 대표적인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인도네시아-자동차사건’과 ‘브라질-자동차사건’ 역시도 동일한 맥락에서 해석할 수 있으며 중국의 자동차부품 사건도 이러한 관점에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중국이 WTO DSB에 제소를 당한 사건은 2012년 3월 기준 26건⁸⁾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그 중에서 TRIMs 협정과 관련된 제소 사건은 미국, EC, 캐나다가 제소한 자동차 부품 사건이 유일함으로 본 사건은 중국의 TRIMs 협정 위반의 대표성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이 사건은 중국이 WTO에서 패소한 첫 사건이라는 점에서 더욱더 큰 의의를 갖는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먼저 WTO의 TRIMs 협정의 개요를 내국민대우원칙과 수량철폐원칙, 개도국 우대조치로 분류하여 살펴보고 중국의 WTO-TRIMs 협정 관련 규정의 변화를 제3자기업법의 개정 내용을 통해 분석해 보도록 한다. 뿐만 아니라 아직까지 현존하고 있는 중국의 TRIMs 협정 위반 소지가 있는 제도나 정책을 언급해 보도록 한다. 또한 중국의 TRIMs 협정 위반 분쟁사례 중에서 자동차 부품 사건 분석을 통해서 중국의 불합리한 제도와 정책을 짚어보고 TRIMs 협정과 부합하는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또한 본 연구는 중국의 TRIMs 협정 위반 분쟁의 법적 쟁점은 물론 아직까지 존재하고 있는 TRIMs 협정 위반 제도나 규정을 분석하였다는 데에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다만, 본 연구에서는 FTA 협상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예컨대 한국에 투자한 미국자본이나 기업이 한국정부를 상대로 국제민간기구에 제소할 수 있게 하는 조항(투자자본이나 기업이 피해를

5) 구체적 자료는 중국해관 홈페이지(<http://www.customs.gov.cn/publish/portal0/>) 참조.

6) 중국의 3자기업법은 외국인 투자관련 법률로써 “중외합작경영기업법(中外合資經營企業法)”, “외자기업법(外資企業法)”, “중외합작경영기업법(中外合作經營企業法)”을 뜻한다.

7) 문준조, 「WTO 가입과 중국의 외국인투자법제정비에 관한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02, p. 114.

8) 제소국을 기준으로 분류한 수치이며 자세한 내용은 http://www.wto.org/english/tratop_e/dispu_e/dispu_by_country_e.htm 참조.

보았다고 판결이 날 경우 한국정부가 배상해야 함)인 투자자 국가소송제도(ISD)는 제외하기로 한다.

II. WTO·TRIMs 협정의 개요

TRIMs는 국제적으로 그 개념에 대해 완전히 정립되어 있지 않지만, 일반적으로 자본유치국 정부가 정책 또는 법령을 통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국가가 외국인투자자에게 본국에 투자를 할 시에 제공하는 것으로서 무역에 영향을 주는 조건들을 채택한 조치를 말한다. 이러한 조치는 '장려성 투자조치'와 '제한성 투자조치'라는 두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다. 대부분의 투자 장려조치는 국제무역과 국제투자의 흐름을 변화시킬 수 있으며 잠재적인 외국인투자자로 하여금 그러한 조치를 취하는 국가에 무역과 투자를 하도록 촉진하게 된다.

이와 동시에 TRIMs는 일부 소극적인 측면에서의 불리한 영향도 가지고 있는데 무역과 투자에 대하여 제한적·왜곡적 작용을 야기하기도 한다. 현재 세계 대부분의 국가들이 대외적으로 외국인투자에 대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장려조치와 제한조치를 모두 채택하고 있으며 그에 상응하는 법령을 제정하고 있다.⁹⁾ 투자제한조치가 국제무역에 소극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고려하여 마라케쉬회의에서 무역관련투자조치를 주요 협상의제의 하나로 포함시켰으며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협상을 통하여 최종적으로 무역관련투자조치 협정안을 채택하였다.¹⁰⁾

TRIMs의 기본원칙은 각 회원국들은 무역을 왜곡시키는 조치를 시행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즉, 본 협정은 GATT 제3조(내국세 및 규제에 관한 내국민대우)와 제11조(수량제한의 일반적 철폐의무)에 합치하지 않는 조치를 금지하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이에 해당하는 TRIMs의 예시목록을 협정의 부속서에 열거하고 있는바¹¹⁾, 이는 강제조항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한편, TRIMs 협정과 관련된 선행연구로서 백윤수(1995)¹²⁾는 TRIMs 협정에 대해 UR 협상에서의 경과와 TRIMs 협정의 내용과 그에 따른 평가와 전망을 분석함으로써 우리나라의 대

9) 聲炯星, 「中外交商投資法問題研究」, 法律出版社, 2001, p. 39.

10) 顧鈺民, 「WTO規則及中國法律的完善」, 同濟大學出版社, 2004, p. 172.

11) TRIMs 협정 제2조 제2항.

12) 백윤수, “무역관계투자조치(TRIMs)에 관한 UR 협정의 의의와 분석”, 「국제거래법연구」, 제4권 제1호, 국제거래법학회, 1995, pp. 111-129.

응방안에 대해서 기술하고 있으며 유창근(1997)¹³⁾은 WTO와 OECD의 투자규범에서의 TRIMs 규정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다. 또한 김영생(1997)¹⁴⁾은 국제투자규범으로서 TRIMs를 소개하고 그에 따른 우리나라의 대응책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으며 김인숙(2004, 2006)¹⁵⁾은 WTO 체제상의 TRIMs 규제제도에 대해서 WTO 출범 이전과 이후로 구분하여 그 문제점을 분석하고 TRIMs의 적용문제에 대해서 특혜의 의미와 그 적용범위에 대해서 분석하고 있다. 본 장에서는 선행연구와는 달리 TRIMs 협정과 관련하여 협정의 기본원칙만을 대상으로 삼고, 이를 내국민대우 원칙, 수량제한철폐원칙, 개도국 우대조치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1. 내국민대우 원칙

TRIMs 협정상의 내국민대우 원칙은 GATT 제3조 제4항에 규정된 내국민대우원칙(Nation Treatment; NT)과 합치하지 않는 TRIMs에 대해 국내법 또는 행정적인 판정에 의하여 강제로 적용되거나 집행 가능한 조치 또는 특혜를 얻기 위하여 준수할 필요가 있는 조치를 말한다. 이는 ① 기업으로 하여금 국산품 또는 국내공급제품을 특정제품으로 제한으로 하거나 제품의 수량 또는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자국의 국내생산량 또는 금액에 대한 비율을 기준으로 구매 또는 사용하도록 하거나(구매의무제도), ② 기업의 수입품 구매나 사용을 자국이 수출하는 국산품의 수량이나 금액과 관련된 수량으로 제한하도록 하는 조치(수입품연계제도) 등을 말하는 데¹⁶⁾ 이러한 조치는 본 협정에 의해서 금지된다.

① 본 협정에서 첫 번째로 들고 있는 것은 구매의무제도이다. 구체적 예로는 국내부품산업의 보호를 위해 부품 중 10% 이상을 국내제품을 사용하게 하는 고시 등이 있을 수 있다.

② 두 번째로 들고 있는 것은 수입품연계제도이다. 이는 생산을 위하여 해외에서 부품을 조달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물량을 수출과 연계하여 허용하는 것으로서 수출입간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제도이다. 예컨대, 자유무역지역으로 설정하면서 원자재나 중간생산재에 대한 수입에 관하여 관세를 유보시켜 주는 등 자유롭게 생산활동을 보장하지만 전액 수출하게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을 들 수 있다.

③ 예시한 앞의 두 가지 규정의 전제로서 국내법령에 의거하여 강제로 적용되는 경우라면 본 조치가 공권력의 행사로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며 단지 사인간(私人間)의 계약에 의

13) 유창근, “WTO와 OECD의 투자규범”, 「영산논총」, 제1권, 영산대학교, 1997, pp. 19-41.

14) 김영생, “국제투자규범의 방향과 우리나라의 대응책”, 「기업경영연구」, 제6권, 수원대학교, 1997, pp. 1-34.

15) 김인숙, “WTO 체제상의 TRIMs 규제제도의 문제”, 「통상법률」, 통권 제59호, 법무부, 2004, pp. 79-118: “WTO에서의 투자인센티브 규제와 문제점”, 「통상법률」, 통권 제72호, 법무부, 2006, pp. 160-183.

16) TRIMs 협정 부속서 제1항.

한 실시 또는 임의적이 조치로 실시되는 경우를 말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그러므로 만약 어떤 외국인이 투자기업을 설립하되 국내동업자와의 사적인 계약으로 일정한 의무를 부담하기로 하였다면 설사 그 내용이 협정에서 말하는 TRIMs처럼 보일지라도 본 협정의 대상이 아님을 주의하여야 한다.¹⁷⁾

2. 수량제한철폐원칙

GATT 1994 제11조 제1항에 규정된 수량제한의 일반적인 철폐의무에 합치하지 않는 조치는 국내법 또는 행정적 판정에 의하여 강제로 적용되거나 집행가능한 조치 또는 특혜를 얻기 위하여 준수할 필요가 있는 조치를 의미한다. 이는 ① 해당 기업에 대하여 국내생산과 관련된 제품의 수입을 전반적으로 제한하거나 동 기업이 수출하는 국내생산량 또는 금액과 관련된 수량만큼만 수입하도록 제한하거나, ② 기업의 외화취득을 동 기업이 벌어들인 외화와 관련된 액수로 제한함으로써 기업이 국내생산에 사용되거나 국내생산과 관련된 제품을 수입하는 것을 제한하거나(금융조치), ③ 기업의 제품수출이나 수출을 위한 제품의 판매를 특정 제품, 제품의 수량 또는 자국의 국내생산량이나 금액에 대한 비용을 기준으로 제한하는 조치 등을 말한다.¹⁸⁾

①의 규정과 ③의 규정은 대체로 문자 그대로 수출과 수입의 물량을 국내경제 사정에 따라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②의 규정상 금융조치는 외화취득 한도를 제한하는 것이다. 예컨대 수입물품에 대한 대금지급방법으로 투자기업이 외국으로부터 가지고 들어온 외화가 있을 수 있고 혹은 현지에서 상품을 생산한 후 이를 외국에 수출하여 얻는 외화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외화를 수입상품 대금으로 사용한다면 투자유치국의 외환사정에는 문제가 없겠으나, 아무런 제한 없이 외국기업이 환전을 한다면 외환수지의 악화를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외환균형을 목적으로 금융조치를 취하게 되는 것이다.¹⁹⁾

3. 개도국 우대조치

개도국에 대해서는 GATT 제18조(경제개발에 대한 정부의 지원), ‘국제수지규정에 관한 양해각서’, 1979년 11월 28일 채택된 ‘국제수지 목적의 무역조치에 관한 선언’에 의거하여 여타

17) 법무부, 「UR협정의 법적 고찰(상)」, 1994, p. 222.

18) TRIMs 협정 부속서 제2항.

19) 법무부, 전게서, p. 225.

체약국들의 양해 하에 내국민대우 및 수량제한 금지를 규정한 본 협정 제2조상의 의무로부터 면제가 일시적으로 허용된다.²⁰⁾

GATT 제18조는 개도국을, ① 저생활수준 및 개발의 초기단계인 개도국, ② 기타 개발도상에 있는 국가(GATT에서는 대체로 OECD 수준에 이르지 못하는 국가를 개발도상국으로 분류)로 분류한 후 ④ 저생활수준 및 개발초기단계인 개도국에 대해서는 제18조 제A, B, C항을 적용하여 비양허품목은 물론이고 양허된 품목이라도 일정한 요건하에 관세율을 인상할 수 있고, 국제수지를 이유로 수량제한조치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폭넓은 예외를 인정하고 ⑤ 기타 개도국에 대해서는 제18조 제D항을 적용하여 체약국단의 승인을 조건으로 제18조 제13항에 규정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제18조의 취지는 회원국이 자국민의 일반적 생활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경제개발계획 및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수출입에 영향을 주는 보호조치 또는 기타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조치가 본 협정의 목적달성을 촉진하는 한 그러한 조치는 정당하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위와 같은 개도국에 주어지는 예외의 허용은 일시적인 것으로 수시로 재검토하여 궁극적으로는 예외를 축소하여 경쟁을 촉진시켜 가는 것이 목표라 할 것이다.

Ⅲ. 중국의 TRIMs 협정 관련 규정의 변화

중국이 WTO에 가입하기 이전에는 당연히 WTO 내의 국제투자조약 의무는 없었지만, 2001년 WTO 가입을 위하여 관련 법률 및 제도를 WTO 기준에 부합하게 개정 및 수정을 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는 WTO 규정과 모순되는 조항을 개정하는 데 중점을 두었으며, 현실과 맞지 않는 조항을 삭제 또는 수정하였다. 그러나 아직 많은 부분에서 WTO 규정에 위배되는 모순이 발견되고 있으며 지방정부 규정과의 불일치도 발견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아직도 TRIMs 협정에 위배되는 제도 및 정책들이 존재하고 있다.

중국의 WTO 가입에 따라 TRIMs 협정과 관련된 국내규정 및 제도변화에 대한 선행연구로서 윤기관(2003)²¹⁾은 중국의 외국인 직접투자전략의 변화를 법령 및 제도, 투자 방식, 정책의

20) TRIMs 협정 제4조.

21) 윤기관, "중국의 WTO 가입 이후 외국인 직접투자전략 변화와 한국기업의 대중국 투자 촉진방안", 「무역학회지」, 제28권 제4호, 한국무역학회, 2003, pp. 189-218.

변화로 구분을 짓고 그에 따른 한국기업의 대중국 투자의 효율적 촉진방안에 대해서 분석하고 있으며 강효백(2004)²²⁾은 TRIMs 협정에 따른 중국의 투자법제를 현행 투자법제의 특성과 협정에 따른 외자법제의 조정으로 구분짓고 그에 따른 문제점 분석을 통해 향후 개선방향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다.

본 장에서는 중국의 외국인 투자관련 법규의 변화를 내국민대우원칙, 투명성원칙, 통일성원칙으로 분류하여 3자 기업법의 변화에 대해서 분석하고 있으며 선행연구와는 달리 아직까지 존재하고 있는 중국의 TRIMs 협정에 위배되는 제도 및 정책의 분석을 통한 차별성을 두었다는데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1. 중국의 외국인투자 관련 법규의 변화

중국은 외국인투자와 직접 연관이 있는 기본법인 “중외합자경영기업법(中外合資經營企業法)²³⁾”, “외자기업법(外資企業法)²⁴⁾”, “중외합작경영기업법(中外合作經營企業法)²⁵⁾”과 시행세칙 뿐만 아니라 개별계약, 세법, 외국인관리법, 금융, 투자, 노동, 재무회계 등 각 방면의 법령도 정비를 하였다.

1) 내국민대우원칙 관련 개정

중국은 WTO 가입과정에서 관련 법률 및 정책으로 우대 및 제한정책을 제거하여 명실상부한 내국민대우를 실시하기로 합의하였다. 그 주요내용으로는 아래의 일곱가지를 들 수 있다.

- 22) 강효백, “WTO TRIMs 협정에 따른 중국의 외국인 투자법제의 개선에 관한 연구”, 「국제법학회논총」, 제49권 제2호, 대한국제법학회, 2004, pp. 127-148: “WTO TRIMs 협정에 따른 중국의 외국인 투자법제의 개선에 관한 연구”, 「통상법률」, 통권 제59호, 법무부, 2004, pp. 119-142: “WTO 무역관련 투자 조치 협정과 중국의 외국인 투자법제에 관한 연구”, 「동북아논총」, 제30권, 한국동북아학회, 2004, pp. 27-52.
- 23) 외국회사, 기업과 기타 경제조직 혹은 개인(이하 ‘외국합영자’로 간칭)이 중국정부의 비준 하에 평등호혜의 원칙에 따라 중화인민공화국 국내에서 중국의 회사, 기업 혹은 기타 경제기구(이하 ‘중국합영자’로 간칭)와 공동으로 합영기업을 설립하는 것을 허용하는 근거가 되는 법률로써 1979년 7월 1일 제5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2차 회의에서 채택, 1990년 4월 4일 제7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3차 회의 “중화인민공화국중외합자경영기업법 개정에 관한 결정”에 근거하여 수정, 2001년3월15일 제9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4차 회의 “중화인민공화국중외합자경영기업법 개정에 관한 결정”에 근거하여 2차 수정되었다.
- 24) 중국이 100% 외자본에 의한 기업의 설립, 운영의 기본자세를 규정한 법률로 전 23조. 법 체계정비에 따른 외자 진출의 활성화가 목적. 1986년 4월 제6기 전국 인민대표대회 제4차 회의에서 채택했다. 동법에서는 중국내에 설립할 수 있는 외자기업은, ① 선진적 기술이나 설비를 이용한다. ② 제품의 대부분을 수출한다는 조건을 충족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또 원재료, 연료의 조달은 “같은 조건이라면 중국내에서 조달해 야 한다.”고 규정했을 뿐 아니라 노동조합의 활동까지도 인정했다. 한편 외자기업의 수익을 인정한 데다 “중국은 외자기업의 국유화 접수를 하지 않는다. 특별한 조건하에서 접수하게 될 때에도 법 절차에 따르며 또한 상응의 보상을 지급한다.”는 사실을 명문화했다.
- 25) 외국기업(홍콩, 대만, 마카오 포함)이 중국과의 합작기업을 설립할 시의 기본 법률로써 본 법규는 1988년 4월 13일 제 7회 전국인민대표대회 제1차 회의에서 최초로 채택되었고, 2000년 10월 31일 제9회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 18차 회의 “중화인민공화국 합작경영기업법 수정에 관한 결정”에 의거하여 세 수정법안을 발표했다.

〈표 1〉 중국의 WTO 가입시 내국민대우관련 주요 합의 내용

항목	내용
외환수지균형 의무조항 삭제	중외합자경영기업법 제20조 ¹⁾ 와 외자기업법 제18조 제3항 ²⁾ 을 삭제, 중외합자기업법 및 시행세칙 중에서 외환균형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삭제.
중국내 우선구매 원칙 수정	중외합자경영기업법 제9조 제2항 ³⁾ 과 외자기업법 제15조 ⁴⁾ 를 수정
수출실요구 조항 수정	외자기업법 제3조 제1항 ⁵⁾ 과 외자기업법 시행세칙에서 외자기업의 중국내 판매량과 수출비율 부문을 삭제, 허가 비율 이상의 내수판매를 위한 비준기관의 승인 규정도 삭제하면서 수출장려 내용으로 수정.
생산경영 계획보고 삭제	외자기업법 제11조 제1항 ⁶⁾ 과 중외합자경영기업법 제9조 제1항 ⁷⁾ 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회주의 계획경제의 유산인 생산경영계획 보고의 조항은 삭제, 비준된 정관에 근거한 경영관리활동은 간섭을 받지 않는 것으로 수정.
외국인 투자기업의 노동자보호 추가	노동자의 권익강화를 위한 중외합자경영기업법 제6조 제4항 ⁸⁾ 으로 개정, 공회조직 및 합법적 권익유지내용을 중외합자경영기업법 제7조에 추가 ⁹⁾ .
보험자 선택제한 철폐	외합자경영기업법과 외자기업법에서 중국보험회에서 중국내 보험회사로 수정
분쟁해결	중외합자경영기업법에서 사전 또는 사후에 서면으로 중재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인민법원에 제소할 수 있는 내용을 2001년에 개정된 중외합자경영기업법 제15조 ¹⁰⁾ 에 추가.

자료 : 각 법조항을 참고하여 정리한 것임.

- 주 1) 合作企業應當自行解決外匯收支平衡。合作企業不能自行解決外匯收支平衡的，可以依照國家規定申請有關機關給予協助。
- 2) 外資企業的產品經有關主管機關批准在中國市場銷售，因而造成企業外匯收支不平衡的，由批准其在中國市場銷售的機關負責解決。
- 3) 合營企業所需原材料、燃料、配套件等，應盡先在中國購買，也可由合營企業自籌外匯，直接在國際市場上購買。
- 4) 外資企業在批准的經營範圍內需要的原材料、燃料等物資，可以在中國購買，也可以在國際市場購買；在同等條件下，應當盡先在中國購買。
- 5) 設立外資企業，必須有利於中國國民經濟的發展，並且採用先進的技術和設備，或者產品全部出口或者大部分出口。
- 6) 外資企業的生產經營計劃應當報其主管部門備案。
- 7) 合營企業生產經營計劃，應報主管部門備案，並通過經濟合同方式執行。
- 8) 合營企業職工的雇用、辭退、報酬、福利、勞動保護、勞動保險等事項，應當依法通過訂立合同加以規定。
- 9) 合營企業的職工依法建立工會組織，開展工會活動，維護職工的合法權益。合營企業應當為本企業工會

提供必要的活動條件.

- 10) 合營各方發生糾紛, 董事會不能協商解決時, 由中國仲裁机构進行調解或仲裁, 也可由合營各方協議在其它仲裁机构仲裁. 合營各方沒有在合同中訂有仲裁條款的或者事后沒有達成書面仲裁協議的, 可以向人民法院起訴.

그러나 이러한 개정은 단지 3자기업법에만 한하는 것이기에 전면적인 개정이라고 보기에 는 무리가 있다. 실제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3자기업법이기는 하지만, 이 외에도 각 분야별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구내 세무 규정 및 법규는 아직 제대로 파악조차 되지 않고 있으며 그러한 규정이나 법규가 또 다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2) 투명성원칙 개정변화

WTO 가입 이전의 비공개적이고 불투명한 의사결정체계는 WTO에 가입하면서 투명성의 원칙에 입각하여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중외합자경영기업법에서 해당 법규의 수정권한이 전국인민대표대회에 있다는 제15조²⁶⁾ 조항을 삭제하였다. 이는 향후 해당 법규의 수정이 필요할 시 전국인민대표대회를 거치지 않고서도 수정 및 개정을 할 수 있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또한 관련 시행세칙에서 세칙의 해석은 대외경제무역부의 해석에 따르는 규정을 삭제하였는데 이는 자의적 해석을 방지하고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판단할 수 있다.

그러나 단지 이러한 해당 법규의 수정권한이 인민대표대회에 있다는 규정의 삭제와 대외 경제무역부의 해석을 따른다는 세칙의 삭제가 투명성 확보를 지칭하는 것만은 아니다. 단지 WTO의 투명성 원칙에 부합하게 개정만 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단지 관련 규정의 삭제만 했을 뿐, 그 기관을 대체하여 어떠한 기관에서 해당 업무를 처리 할 것인지의 명확한 근거 규정이 없기에 이는 다른 각도에서 볼 때 투명성의 확보라고 볼 수는 없다.

3) 통일성원칙 개정변화

WTO 정책 및 법률의 통일성 원칙에 의하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입법 및 정책은 일관성을 유지해야하며 또한 각 지방간의 입법과 정책도 일관성을 유지해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중국의 각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의 통일성 정책 요구대로 관련된 지방성 법규 및 지방정부 규정과 기타 정책조치를 정리²⁷⁾하고 있지만 그 통일성을 확보하기 까지는 많은

26) 本法自公布之日起生效。本法修改權屬於全國人民代表大。

시간이 더 소요될 것으로 보여 진다. 그 시간동안의 지방성 법규와 지방정부의 규정은 WTO-TRIMs 협정에 위반되는 사항으로 여전히 영향을 미칠 수 있다.

2. 중국의 TRIMs 협정 위반 제도 및 정책

1) 통신업체 관행

통신업체에 대해서는 수입부품과 수입장비에 대한 명시적인 조항은 없으나 관행적인 국산품 구매가 이루어지고 있다. 통신관련 업체에 보낸 문건을 통해 중국산 부품과 장비를 구입하도록 요구하였으며, 이로 인해 외국산 제품 수요시 직접 해외에서 수입하기보다는 중국내 외자기업 생산제품을 구매하는 관행이 이루어지고 있다.

2) 신철강산업정책

철강산업에 있어서도 2005년 7월 발표한 ‘신철강산업정책(新鐵鋼產業政策)’을 통해 외국인 투자를 제한하고, 외국설비 수입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는 외국투자기업에 일정 수준 이상의 기술수준과 투자규모기준을 제시하고, 국내 중소형 제철소를 통폐합해 국제적 경쟁력을 가진 대규모 기업으로 육성하려는 계획으로써²⁸⁾ 해외설비 도입은 선진화된 설비로 제한하고 도태된 중고 외국 생산설비의 도입을 금지함으로써 사용빈도가 높은 설비는 국산화를 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또한 외국기업의 투자에 있어서도 일정규모 이상의 기업만 중국에 투자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으며²⁹⁾, 진출 방식에 대해서도 마케팅 방면에서 자체 유통 및 물류시스템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지배구조면에서 중국의 기존 철강기업의 M&A를 통해서만 진출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

또한 철강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중국산 장비를 이용한 철강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세수 감면, R&D 지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중국철강설비의 해외도입은 중국에서 생산되지 않는 선진적이고 실용적인 경우에만 가능하며, 낙후된 중고 생산 설비의 해외도입은 금지된다.

27) 예를 들면 국무원법제사무실이 공포한 「關於爲適用加入世貿組織的，加強對有關地方性法規，地方政府規章和其它政策措施清理工作的指導的通知」는 지방정부에게 해당 정책의 통일성 확보를 순조롭게 진행할 수 있도록 법률정책의 통일성을 유지시켜 주는 것이다. 이것은 WTO 가입 조건 요구사항에 적용하기 위한 관련 지방성 법규, 지방정부규정 및 기타 정책조치에 대한 정리작업지도통지를 의미한다. 이 통지는 중국 국무원법제사무실이 공포한 「對外貿易經濟合作部辦公廳關於通報外貿部部門規章，文件清理情況的通知」(2002년 1월 4일 발표)중의 하나이다.

28) 김성재, 「주요 수출시장의 비관세장벽(NTBs) 현황」, KOTRA, 2007, p. 172.

29) 외국기업은 전년도 보통강 생산량이 1,000만 톤 이상, 전년도 특수강 생산량이 100만톤 이상의 외국기업으로 한정하고 있다.

3) 개정 외국인투자방향 지도규정

개정된 ‘외국인투자방향 지도규정(指導外商投資方向規定)³⁰⁾’ 제10조에서는 “제품의 100%를 수출하는 허가류의 외자프로젝트를 장려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수출비율이 70%이상인 제한류 외자프로젝트의 경우 지방정부 등의 허가를 받는 경우 허가류로 인정한다.”는 규정은 간접적인 수출요구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³¹⁾

IV. TRIMs 협정 위반 분쟁사례 - 자동차 부품

1. 사건개요

중국의 ‘자동차산업 발전정책’³²⁾과 ‘완성차 특징을 갖춘 자동차부품 수입관리 방법(構成整車特征的汽車零部件進口管理辦法)’³³⁾에 의하면 다음 세 가지 경우에는 수입되는 자동차부품에 대해 10%의 부품관세율이 적용되지 않고, 25%의 완성차 관세율이 적용된다.

첫째, Knock down 부품을 수입하는 경우

둘째, 차체·엔진 등 특정 조립부품을 조합하여 수입하는 경우

셋째, 수입부품의 CIF 가격 합계가 완성차 총액의 60%이상인 경우³⁴⁾

이 조치는 일정비율 이상의 완성차 부품 혹은 반완성차 부품을 해외에서 중국으로 수입하여 완성차를 조립·생산하는 행위를 엄격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EC·미국·캐나다는 이러한 조치들이 자동차 생산에 사용되는 부품의 자국산 비율에 따라 중국에서 자동차를 생산하는 기업에 대해 수입부품 관세율이 다르게 적용된다고 평가했다. 따라서 이 조치는 중국산 부품을 사용하여 중국에서 자동차를 생산하는 기업에게 이익을 제공하는 효과가 있으며, 외국의 투자자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해석하였다. 특히 자동차

30) 중국 국무원은 2002년 2월 26일 중국의 국민경제 및 사회발전계획에 적용하고 투자자들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1995년 6월 20일부터 시행해 온 ‘외국인투자 방향지도감정규정’을 폐지하고 중국내 외국인 투자에 대한 각종 우대부여 및 심사비준의 정책적 기준이 되는 ‘외국인투자방향지도규정’(2002년 2월 11일 국무원령 제346호)을 공포하였는데(2002년 4월 1일부 시행), 여기서는 외국인투자 영역을 장려, 허가, 제한, 금지의 4가지로 분류하고 규정 본문에서는 장려, 제한, 금지영역만을 나열하였으며, 그 외 부분은 허가영역으로 간주하고 있다.

31) 생산품의 전체를 수출하는 허가영역의 외국인 투자도 장려영역으로 간주한다. 수출비율이 70%이상인 제한영역의 외국인 투자의 경우 성/자치구/직할시/계획단위시 인민정부 혹은 국무원 관계부문의 비준을 거쳐 허가영역으로 간주한다.

32) 2004년 6월 1일 발표되었고, 제11장 수입관리에 규정되어 있다.

33) 2005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나, 본 사건의 패소를 받아들이고 이에 대한 조치로써 2009년 9월 1일자로 폐지되었다.

34) 2006년 7월 1일부터 적용되고 있다.

수입부품을 대체하여 중국산 부품을 사용하는 기업에게 중국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해석했다.

한편 중국에서는 문제의 조치에서 관세율을 달리하는 기준은 수입 부품이 어떠한 형태로 수입되느냐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자동차 생산업체들이 부품을 수입하는데 그 목적이 있느냐 아니면 조립에 목적이 있느냐에 근거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문제의 조치는 관세를 정확히 부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취해진 것으로서 완성 자동차로서의 성격을 갖는 조립부품 일체를 수입하는 경우에 부과하는 것이므로 실질적으로 부품수입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동 조치는 완성차의 성격을 가진 수입 부품 및 조립부품을 수입하여 중국내에서 자동차를 조립하는 기업에 대해서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³⁵⁾

2006년 EC·미국·캐나다는 중국의 과세 조치에 따라 동 국가들의 대 중국 자동차 부품 수출에 문제가 발생되었다고 판단하여 해당 사건을 WTO에 제소하였고, 동 사건은 2009년 1월 12일 종결되었다.

2. 주요 쟁점

이 사건에서 주요 쟁점은 TRIMs 협정의 위반 및 내국민대우의 위반에 관한 문제이다.

1) TRIMs 협정 제2조의 내국민대우 위반

TRIMs 협정 제2조는 내국민대우 조항이다. 동 제2조 제1항에서는 “GATT 제3조의 내국민대우에 저촉되는 무역관련 투자조치를 실시해서는 안된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제2조 제2항에 따른 부속서 제1항에서는 GATT 제3조 제4항의 내국민대우 의무를 위반하는 무역관련 투자조치를 예시하고 있다. 여기에 예시적으로 열거된 사항에는 투자의 조건으로 국산품의 구매 또는 사용을 의무화 하는 조치 또는 수입품의 구매 또는 사용을 제한하는 조치 등이 있다.

본 사건에서는 국산부품 사용요건을 충족한 자동차 생산업체에 대해서는 수입부품에 대해 10%의 낮은 부품관세율을 적용하고 그렇지 않은 업체에 대해서는 25%의 높은 완성차 관세율을 적용한 중국정부의 조치가 문제가 되었다. 이 조치에 의해 중국 현지에서 자동차를 조립 및 생산하는 외국인 투자기업이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 것이다.

35) Reports of the Panel on China-Measures Affecting Imports Of Automobile Parts, WT/DS339/R, WT/DS340/R, WT/DS341/R, 2008, paras. 7.350-352.

중국에서 자동차 수입부품에 대해 적용한 조치는 국산부품을 사용한 업체에 대해 특혜를 부여한 것으로 외국인 투자기업을 부당하게 대우한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종류의 조치는 이미 ‘캐나다 외국투자검토법의 운영에 관한 사건’³⁶⁾에서 검토되었다. 본 사건은 WTO 체제가 출범하기 이전에 발생된 것으로 위와 같은 종류의 조치는 무역왜곡효과가 명백한 무역관련 투자조치로서 GATT의 내국민대우에 위배된다고 판정되었다. 그 후 WTO가 출범하면서 위와 같은 종류의 조치는 TRIMs 협정 제2조에 의해 명시적으로 금지되고 있다.

2) GATT 제3조의 내국민대우 위반

본 사건에서 중국이 일정비율 이상의 수입부품에 대해 완성차 관세율을 적용하는 조치는 TRIMs 협정과 별도로 GATT 제3조의 적용을 받게 된다.

GATT 제3조에서는 내국민대우원칙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 조항은 무역관련 투자조치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TRIMs 협정에 위반되지 않는 조치라고 하더라도 GATT 제3조의 적용을 받는 조치로 판단될 여지가 있는 경우에는 TRIMs 협정과 관계없이 직접적으로 GATT 제3조의 위반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GATT 제3조 제1항은 정책의 일반적인 선언으로서 회원국에게 국내생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조세나 규제를 사용하지 않을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제3조 제4항에서는 수입상품의 국내 판매에 영향을 미치는 규제나 다른 요건에 관하여 국내상품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GATT 제3조 제2항에서는 “다른 계약당사자의 영토내로 수입되는 계약당사자 영토의 상품 은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동종의 국내 상품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적용되는 내국세 또는 그 밖의 모든 종류의 내국과징금을 초과하는 내국세 또는 그 밖의 모든 종류의 내국과징금의 부과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또한 어떠한 계약 당사자도 제3조 제1항에 명시된 원칙에 반하는 방식으로 수입 또는 국내상품에 내국세 또는 그 밖의 내국과징금을 달리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GATT 제3조 제4항에서는 “다른 계약국의 영역 내로 수입되는 계약국 영역의 상품은

36) Canada-Administration of the Foreign Investment Review Act(FIRA), 7 February 1984, 1994년 GATT B.I.S.D.(30th Supp.), p. 140.: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외국투자검토법(Foreign Investment Review Act)”는 외국투자자들이 캐나다에서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서면으로 일정한 약정을 제출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사업승인의 조건이 된다. 이 약정에는 외국투자자들이 국산물품을 사용하도록 하는 규정 등이 포함되어 있었고 동 약정에 따라 국산물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하는 경우 이용 가능한 수입상품의 구입을 배제하게 됨으로 수입상품에 대하여 국내물품보다 불리한 대우를 주게 되어 GATT 제3.4조에 위배된다는 평결이 있었다.

그 국내판매 또는 판매를 위한 제공·구입·수송·유통 또는 사용에 영향을 주는 모든 법률, 규칙 및 요건에 관하여 국내원산의 동종 상품에 부여되고 있는 대우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부여받아야 한다. 또한 본 조항의 규정은 교통수단의 경제적 운영에 전적으로 입각하였으며 상품의 원산국을 기초로 하지 아니한 차별적 국내 운송요금의 적용을 방해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상의 내국민대우의 원칙이 WTO 체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어떠한 예외도 인정하지 않는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GATT에서는 일정한 상황에 따라 체약국의 일반적인 의무를 배제할 수 있는 예외 제도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었다. 그 일환으로서 체약국이 일정한 국내적 정책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취하는 국내조치에는 협정상의 일반적 의무가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는 정당한 예외조항으로서 제20조를 두게 되었다. 따라서 일국의 무역관련 국내조치가 내국민대우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결정되면 해당 조치는 다시 제20조의 일반적 예외조항에 의해 그 정당성 여부를 최종적으로 검토하게 된다. 따라서 내국민대우 원칙에 위반되는 조치라고 하더라도 제20조의 일반적 예외조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정당한 조치로 인정된다.

그런데 내국민대우 원칙을 위반하는 국내조치 등이 개별적인 예외조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아무 제한 없이 바로 그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은 아니다. 개별적인 예외조항에 속하는 조치들은 동 조항의 서문이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동일한 조건하에 있는 국가 간에 자의적이거나 부당한 차별의 수단 또는 국제무역에 대한 위반된 제한을 구성하는 방법으로 적용되지 않아야 한다는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따라서 내국민대우 원칙에 위배되는 국내조치가 정당하다는 것을 제20조에서 구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들을 차례로 입증하여야 한다.

첫째, 문제의 조치가 제20조 개별조항에 열거된 특정의 예외사항에 해당된다.

둘째, 문제의 조치가 해당 예외조항이 개별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조건을 충족시키고 있다.

셋째, 문제의 조치가 동 조항 서문상의 요건을 충족시키고 있다.³⁷⁾

그런데 제3조의 내국민대우는 각 회원국이 다른 회원국에게 조항상의 의무를 요구할 수 있는 실체적 권리를 부여하는 조항이다. 이는 제3조의 내국민대우 권리를 주장하는 수출회원국의 권리가 제20조에 따라 예외를 주장할 수 있는 수입회원국의 권리보다 더 중요하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협정상의 일반적 의무로부터 이탈하는 국내조치를 정당화하기 위해 제20조를 원용하는 상대국에게 예외조항에 해당된다는 입증책임을 부여하고 있다.³⁸⁾

37) 심영규, “GATT/WTO 법체제에서의 비차별원칙에 관한 연구 - GATT 1994의 제1조, 제3조 및 제20조 Chapeau를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3, p. 191.

본 사건과 관련된 예외조항은 제20조 제1항 제(d)호이다. 동 조항에서는 “통관의 시행, 제2조 제4항 및 제22조 하에서 운영되는 독점의 시행, 특허권·저작권·상표권 보호 그리고 기만적 관행의 방지와 관련된 법률 또는 규정을 포함하여 이 협정의 규정에 불합치 되지 아니하는 법률 또는 규정의 준수를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는 내국민대우에 위반되는 조치라고 하더라도 인정된다. 다만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제20조 제1항 제(d)호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제20조의 서문상의 요건을 충족시켜야 예외조치로서 정당화 될 수 있다. 제20조의 서문에서는 “다음의 조치가 동일한 여건이 지배적인 국가 간에 자의적이거나 정당화 할 수 없는 차별의 수단을 구성하거나 국제무역에 대한 위장된 제한을 구성하는 방식으로 적용되지 아니한다는 요건을 조건으로, 이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체결당사자가 이러한 조치를 채택하거나 시행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판정내용

1) TRIMs 협정 제2조의 내국민대우 위반에 대한 검토 생략

수입산 자동차 부품에 대하여 중국이 취한 조치는 외국인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이기 때문에 TRIMs 협정의 내국민대우에 위배되는 무역관련 투자조치이다. 그런데 동 조치는 GATT의 내국민대우에도 위배되는 조치일 수 있다. 따라서 WTO에서 TRIMs 협정 관련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상품에 관한 규범인 GATT와 투자규범인 TRIMs 협정 중 어느 것을 우선적으로 검토할 것인가의 문제가 발생되곤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인도네시아 자동차사건’에서는 GATT 1994 제3조와 TRIMs 협정 제2조 모두 독립적이고 명확한 규정들로서 이 규정들 중 하나가 적용되지 않아도 다른 하나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두 조항의 규정 모두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결정하였다. 다만 GATT 1994 제3조보다 TRIMs 협정 제2조의 조항이 더 특수한 것으로 판단하여 TRIMs 협정을 먼저 검토하기로 결정하였다.³⁹⁾

그러나 중국의 자동차 수입부품에 관련된 사건에서는 GATT 1994 제3조의 규정을 먼저 검토하기로 결정하였다. 그 이유는 WTO에서의 TRIMs 협정 관련 사건사례들에서는 ‘인도네시아 자동차 사건’을 제외하고는 모두 일관되게 GATT와 TRIMs 협정의 관계에서 GATT 제3조를 먼저 적용하여 판정하고 있었기 때문이다.⁴⁰⁾ 또한 TRIMs 협정에 따르면 “회원국은 GATT

38) 상계논문, pp. 187-188.

39) Panel Report on the Indonesia-Certain Measures Affecting the Automobile Industry case. WT/DS54/R, WT/DS55/R, WT/DS59/R, WT/DS64/R, 2 July 1998, paras. 14.61-63.

1994에 따른 그 밖의 다른 권리와 의무를 저해함이 없이 GATT 1994 제3조의 내국민대우 규정에 합치하지 아니하는 무역관련 투자조치를 적용해서는 안된다⁴¹⁾고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TRIMs 협정에 위배되는 무역관련 투자조치인가의 여부를 판단할 때는 다음 세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첫째, 문제의 조치가 무역관련 투자조치 일 것.

둘째, 동 조치가 GATT 1994 제3조 또는 제11조에 합치하지 아니할 것.

셋째, 동 조치가 TRIMs 협정에서 금지하고 있는 예시목록⁴²⁾ 중 하나의 조치에 해당될 것.

그런데 중국의 자동차 수입부품사건에서는 이미 GATT 1994 제3조의 내국민대우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었기 때문에⁴³⁾ TRIMs 협정을 위반하였는가의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없었다. 동 사건에서는 ‘캐나다-자동차사건’ 및 ‘인도-자동차사건’에서와 동일하게 TRIMs 협정 위반 여부에 대한 검토를 생략하였다.⁴⁴⁾

40) 구체적으로는 ‘중국-자동차 사건’ 이외에 ‘캐나다-자동차 사건’, ‘EC-바나나 사건Ⅲ’, ‘인도-자동차사건’ 등이 있다. EC-Bananas Ⅲ사건’에서는 두 조항 가운데 어느 조항이 더 특별한 조항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일치된 견해가 존재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동 사건에서는 GATT 1994 제3조 규정을 먼저 검토하기로 결정하였다.

41) TRIMs협정 제2조에 따르면 “1. 회원국은 1994년도 GATT에 따른 그 밖의 권리와 의무를 저해함 없이 동 규정에 합치하지 아니한 무역관련 투자조치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 GATT 1994 제3.4조에 규정된 내국민대우 의무와 GATT 1994의 제 I.1조에 규정된 수량제한의 일반적인 철폐 의무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무역관련 투자조치의 예시 목록이 이 협정의 부속서에 포함된다.”

42) TRIMs협정 부속서상의 금지되는 조치들은 다음과 같다.

1. 국내법 또는 행정적인 판정에 의하여 의무적이거나 집행 가능한 조치 또는 특혜를 얻기 위하여 준수할 필요가 있는 조치로서,

가. 기업으로 하여금 국산품 또는 국내공급제품을, 특정 제품을 기준으로 하거나 제품의 수량 또는 금액을 기준으로 하거나 또는 자신의 국내생산량 또는 금액에 대한 비율을 기준으로 하여 구매 또는 사용하도록 하거나, 기업의 수입품의 구매 또는 사용을 자신이 수출하는 국산품의 수량이나 금액과 관련된 수량으로 제한하도록 하는 조치를 포함한다.

2. GATT 1994 제4.1조에 규정된 수량제한의 일반적인 철폐의무에 합치하지 아니하는 무역관련 투자조치는 국내법 또는 행정적 판정에 의하여 의무적이거나 집행 가능한 조치 또는 특혜를 얻기 위하여 준수할 필요가 있는 조치로서,

가. 기업에 대하여 국내생산에 사용되거나 국내생산과 관련된 제품의 수입을 전반적으로 제한하거나, 동 기업이 수출하는 국내생산량 또는 금액과 관련된 수량만큼만 수입하도록 제한하거나,

나. 기업의 외환취득을 동 기업이 벌어들인 외환과 관련된 액수로 제한함으로써 기업이 국내생산에 사용되거나 국내생산과 관련된 제품을 수입하는 것을 제한하거나, 또는

다. 기업의 제품수출이나 수출을 위한 제품의 판매를 특정제품, 제품의 수량 또는 금액 또는 자신의 국내생산량 또는 금액에 대한 비율을 기준으로 제한하는 조치를 포함한다.

43) TRIMs협정의 내국민대우 규정은 외국인 투자에 대한 일반적 의무로서 내국민대우를 부여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동 협정에서 회원국은 일방 상대국의 무역관련 투자조치가 GATT 1994 제3조 및 제11조의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에만 동일 국가에 대하여 내국민대우 규정에 위배되는 무역관련 투자조치를 제거해 줄 것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Jian Zhou, “National Treatment In Foreign Investment Law: A Comparative Study From A Chinese Perspective”, *Touro International Law Review*, No.39, 2000, p.110.

44) Reports of the Panel on China-Measures Affecting Imports Of Automobile Parts, *op.cit.*, paras. 7.366-7.368.

2) GATT 제3조 제2항의 내국민대우 위반

중국의 수입부품에 대한 조치가 제3조 제2항을 위반하였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는데 검토되어야 하는 사항들은 다음과 같다.

① 수입상품과 국내 상품이 동종 상품이어야 한다.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상품은 모두 수입자동차부품으로 중국정부가 원산지를 수입부품과 국산부품을 구별하는 유일한 기준으로 사용하였기 때문에 두 상품을 동일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 타당하다.⁴⁵⁾

② 수입상품이 국산 동종상품에 비해 초과 과세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어야 한다.

중국정부의 과세조치는 GATT 1994 제3조 제2항 상의 내국세에 해당한다는 것을 중국정부가 이미 인정하였다.⁴⁶⁾ 또한 국산부품은 중국정부의 과세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에서 중국정부의 과세조치는 GATT 1994 제3조 제2항에 위배된다.⁴⁷⁾ 즉 국산부품은 중국 정부의 과세 대상이 아닌 반면 외국 수입부품들에 대해서만 과세가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차별대우가 행해졌다고 판단한 것이다.

③ 해당 조치가 국내생산을 보호하기 위해 적용되어야 한다.

중국에서 자동차 수입부품에 대한 조치는 중국산 부품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그 결과 중국 국내의 자동차산업 및 부품산업을 보호하는 효과가 발생되었다. 즉 해당 조치에 의해 보호주의적 효과가 발생되었다.

3) GATT 제3조 제4항의 내국민대우 위반

동 조항에서는 국내법령, 규칙 및 요건 등 비재정적 국내조치가 수입상품과 동종의 국내상품을 차별적으로 취급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므로 제3조 제4항에 대한 위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검토되어야 하는 사항들은 다음과 같다.

① 수입상품과 국내 상품이 동종 상품이어야 한다. 이 사항은 이미 제3조 제4항에서 양 상품 사이의 동종성이 인정되었다.

② 국내법령, 규칙 및 요건이 수입상품의 국내 판매에 영향을 주어야 한다. 중국의 조치는 수입부품을 사용하는 모든 자동차 생산업체에 대해 강제성을 갖는 ‘법령·규칙’이다. 또한

45) *Ibid.*, para. 7.216.

46) 제소국들은 중국이 GATT1994 제III:2조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국내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다고 주장한 반면 중국은 해당 조치에 따른 과세는 GATT 1994 제2.1(b)조에 따른 일반적 관세에 해당할 뿐이라고 반박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패널은 우선 중국의 조치에 따라 부과된 과세가 GATT 1994 제3.2조 상의 내국세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Ibid.*, para 7.210.

47) *Ibid.*, paras. 7.221-223.

이러한 조치들이 계획적으로 고려되었다면 ‘요건’에 해당되는 것으로 본다.⁴⁸⁾ 한편 ‘법령·규칙·요건’과 같은 국내 조치가 국내에서의 판매에 ‘영향을 미치는’이라는 용어는 국산품과 수입상품간의 경쟁조건을 부정적으로 변경하는 조치들을 포함하여 판매 또는 구매조건을 직접적으로 통제하는 조치들을 포함하는 것으로 넓게 해석하였다.⁴⁹⁾

‘미국 FSC 사건’에서는 제3조 제4항 상의 ‘영향을 미치는’이라는 용어는 판매 또는 구매조건을 직접적으로 통제하는 법률 또는 규칙들 뿐만 아니라 국산품과 수입상품 간의 경쟁조건을 부정적으로 변경하는 법률 또는 규칙들을 포함하는 것으로 넓게 해석된다고 판단하였다.⁵⁰⁾

결론적으로 중국 정부가 수입부품을 사용하는 자동차 생산자에 대해 일정한 기준에 따라 요구하고 있는 행정절차는 수입부품 대신 국산부품을 사용하도록 하기 위해 자동차 생산업체에 대해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동 조치는 GATT 1994 제3조 제4항 상의 수입부품의 국내 판매·관매를 위한 제공·구입·수송·유통 또는 사용에 관하여 영향을 미친다고 결정되었다.⁵¹⁾

③ 수입상품에 대해 불리한 대우를 하고 있다. 중국의 조치는 자동차부품이 중국으로 수입되기 이전 및 수입과정에서 그리고 수입 이후에 자동차 조립을 위하여 수입부품을 사용하는 자동차 생산업체에 대해 부과된 행정절차이다. 동 조치는 중국상품에는 적용되지 않는 행정절차로 수입품에만 적용된다. 이로 인하여 전 생산과정을 통해서 실질적 지연이 발생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문제의 조치는 중국 내 시장에서 자동차 부품에 손해를 초래하는 경쟁조건변경에 해당된다.⁵²⁾

또한 수입부품이 중국의 조치에 따른 결정기준을 충족시키고 있는가의 여부는 자동차 부품이 최종적으로 조립된 때에 판단된다. 따라서 문제의 행정절차를 피하기를 원하는 자동차 생산업체가 국산품과 수입부품의 선택할 때 영향을 받게 된다. 즉 자동차 생산업체가 중국의 조치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절차를 피하기 위해서는 자동차 조립에 사용된 수입부품의 비율이 동 조치상의 비율을 초과하지 않는다는 점을 증명해야 한다.⁵³⁾

따라서 이러한 중국의 조치는 경쟁조건변경에 해당하는 동종의 수입상품에 대한 불리

48) *Ibid.*, paras. 7.236-7.243.

49) 제소국들이 인용한 사례는 다음과 같다 Appellate Body Report on US - FSC(Article 21.5), para. 210; Panel Report on Canada - Autos, para. 10.73; Panel Report on EC - BananasIII, para. 7.175; Panel Report on India - Autos, para. 7.196; GATT Panel Report on EEC- Parts and Components, para. 5.21; GATT Panel Report on Italy - Agricultural Machinery, para. 12; and GATT Panel Report on US - Section 337, para. 5.10.

50) Reports of the Panel on China-Measures Affecting Imports Of Automobile Parts, *op.cit.*, paras. 7.251-7.252.

51) *Ibid.*, para. 7.257.

52) *Ibid.*, para. 7.269.

53) *Ibid.*, para. 7.270.

한 대우에 해당된다.

4) 내국민대우 위배조치에 대한 입증문제

내국민대우 원칙에 위배되는 국내조치가 정당하다는 것을 제20조에서 구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들을 차례로 입증하여야 한다.

첫째, 문제의 조치가 제20조 개별조항에 열거된 특정의 예외사항에 해당된다.

둘째, 문제의 조치가 해당 예외조항이 개별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조건을 충족시키고 있다.

셋째, 문제의 조치가 동 조항 서문상의 요건을 충족시키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예외조항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입증할 책임은 중국정부에 있다.

중국정부에서는 동 조치를 행한 이유는 관세를 정확하게 부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취해진 것으로서 완성 자동차의 성격을 갖는 조립부품 일체를 수입하는 경우에만 부과하는 조치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자동차 또는 부품수입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즉 관세를 정확하게 부여하기 위해 통관의 시행에 관한 법률 등 이 협정의 규정에 불합치 되지 아니하는 법률 또는 규정의 준수를 확보하기 위하여 행한 조치라는 주장을 하였다.

그러나 이는 중국의 조치가 관세를 정확하게 부여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였다는 충분한 이유가 되지 못한다. 즉 구체적으로 자국의 조치가 정당하게 예외조항에 해당된다는 입증을 하지 못하였다.

4. 판정내용 분석

WTO 출범 이후 1996년 처음으로 브라질의 자동차산업육성⁵⁴⁾을 목적으로 취해진 무역관련 투자조치에 관한 사건(일명 ‘브라질-자동차사건’⁵⁵⁾)에서 TRIMs 협정이 주요 이슈가 된 이후 ‘캐나다-자동차사건’⁵⁶⁾, ‘인도-자동차 사건’⁵⁷⁾, ‘필리핀-자동차사건’⁵⁸⁾ 등에서 TRIMs 협정이 차례로 문제가 된 바 있다.⁵⁹⁾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WTO 체제가 출범한 이후 브라질

54) 1991년 브라질의 자동차제도는 다른 MERCOSUR 회원국으로부터 수입된 부품 및 조립품이 국내부품으로 취급될 것을 규정하고 있는 아르헨티나와 MERCOSUR 간에 체결된 협정을 이행하기 위한 것이다.

55) 브라질 정부는 1995년 6월 13일 대통령령 1024호를 통하여 자동차 수입규제 및 자동차산업 보호조치를 발표하였다. 1996년 6월과 8월 이러한 조치에 대해 일본, 미국과 EU가 문제를 제기하고 DSU에 따른 협의를 요청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 사건은 패널설치로 인한 패소의 가능성을 예상한 브라질 측이 협의에 의해 사건을 해결하기로 합의함으로써 패널설치는 이루어지지 않고 당사국들 간의 상호합의로 문제가 해결되었다.: Brazil-Certain Automotive Investment Measures, WT/DS51, 30 July 1996/ WT/DS52, 9 August 1996.

56) Canada-Certain Measures Affecting the Automotive Industry, WT/DS139/R, WT/DS142/R, 11 February 2000.

57) India-Measures Affecting the Automotive Sector, WT/DS146/R, 21 December 2001.

58) Philippines-Measures Affecting Trade and Investment in the Motor Vehicle Sector, WT/DS195. 23 May 2000.

과 인도네시아의 자동차산업에 대한 무역과 투자정책에 관심을 보이면서 1996년 10월 브라질과 인도네시아의 자동차정책이 TRIMs 협정에 위배된다는 주장과 함께 Section 301⁶⁰⁾에 따라 이들 국가의 정책이 WTO 협정에 위배되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였다.⁶¹⁾ 결국 1997년 미국은 브라질과 인도네시아의 자동차산업정책을 문제 삼았고,⁶²⁾ EC와 일본이 이를 지지한 바 있다.⁶³⁾

‘브라질-자동차사건’은 WTO에서 당사국들 간의 협의에 의해 해결되었으나, ‘인도네시아-자동차사건’ 등 다수의 TRIMs 협정 관련 사건들은 DSB에 부탁되거나 협의절차를 거쳐 해결되었다. 이러한 사건들에서 보는 바와 같이 WTO에서 TRIMs 협정 관련 문제는 주로 자동차산업과 관련하여 제기되고 있으며 그 만큼 자동차 관련 사건은 WTO에서 의미가 크다.⁶⁴⁾ 특히 이 사건은 중국이 WTO에서 패소한 첫 사건이라는 점에서도 국내·외적으로 파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자동차사건’에서 중국이 패소함으로써 중국의 관련 조치가 폐기되어, 한국의 자동차 부품산업 및 중국에 투자한 한국 자동차 및 부품 생산업체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리고 본 판정은 이전의 사건들과 동일하게 GATT 제3조의 내국민대우에 관련된 쟁점만을 다루고, TRIMs 협정에 관한 판단은 생략하였다. 이는 GATT 제3조이건 TRIM 협정이건 어느 하나의 조항에 위배되면 내국민대우의 위반이 성립되기 때문에 더 이상의 분석은 의미가 없기 때문에 합당한 조치였다고 판단된다.

다만 TRIMs 협정 제2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TRIMs로서 즉시 철폐되어야 하는 국산부품 사용요건에 대한 쟁점은 직접적으로 분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쉬운 부분은 있다. 동 사건에서는 수입부품 비율이 초과되는 자동차 생산업체가 부품 수입시에 높은 관세율을 부과 받은 것에 대한 쟁점만 검토하였다. 실제로 중국의 조치는 수입 부품에 대한 높은 관세율의 부과 자체도 문제가 크지만 중국 자동차 부품산업의 보호를 목적으로 국산부품 사용요건을 관세율과 연계하여 부과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더 크다고 볼 수 있다. 국산부품사용 요건은

59) 1995년 일본이 미국의 자동차 산업에서 외국 투자자들에 대하여 부과하고 있는 이행요건(특히 Local content requirements)을 문제 삼았던 사례 또한 이러한 현상을 반영하는 것이다.: U.S. “Coercion” of Japanese Automakers Raises Legal Issues, MITI Report Charges, *International Trade Daily* (BNA) (Mar. 31, 1995), in Westlaw BNA-BTD Database(<http://www.lawschool.westlaw.com>).

60) Trade Act of 1974 §301, 19 U.S.C. § 2411(1994 & Supplement. II 1996).

61) Mark Felsenthal, “U.S. Launches Section 301 Investigations against 4 Nations Regarding Cars, Textiles,” *International Trade Daily* (BNA) (Oct. 3, 1996), in Westlaw BNA-BTD Database.

62) John Parry & Ed Taylor, “TRIMs: United States Accuses Indonesia, Brazil of Violating TRIMs Obligation,” *International Trade Daily* (BNA), in Westlaw BNA_BTD Database. (1997).

63) *Ibid*

64) George Kleinfeld & Deborah Wengel, “Foreign Investment,” *International Lawyer*, vol. 31, 1997, pp. 403~405.

TRIMs 협정상 금지되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TRIMs 가운데 하나로서 WTO 회원국들은 WTO 설립협정의 발효 후 최대 7년 이내에 철폐하여야 하는 조치이다.⁶⁵⁾ 따라서 중국의 조치는 TRIMs 협정에도 위배되는 것으로 판정되었을 것으로 본다.

V. 결 론

본 고에서는 UR협상에서 타결된 TRIMs 협정의 개요를 GATT 1994 제3조 제4항에 규정된 내국민대우원칙과 GATT 1994 제11조 제1항에 규정된 수량제한철폐칙, GATT 제18조(경제개발에 대한 정부의 지원)와 국제수지 목적의 무역조치에 관한 선언에 의거한 개도국 우대 조치로 분류하고서 분석하였다.

TRIMs 협정 위반 분쟁사례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중국의 상소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이번 안전에서 내국민대우를 위반했다는 사실이 재확인되었다. 그러나 상소기구는 해당 제품에 대해 높은 관세율을 적용시키는 것이 WTO 가입 시 시장을 점차 개방하겠다는 중국의 약속을 어기는 행위는 아니라고 판정하여 중국 측에서 다행스럽게 받아들였다.⁶⁶⁾

이에 중국은 2009년 8월 31일의 DSB 위원회에서 2009년 8월 15일 산업 정보 기술부 및 국가 발전 개혁 위원회의 두 부처가 자동차산업 개발정책의 자동차 부품 수입과 관련된 위반 조치들의 중지를 위한 법령을 발표 하였다고 DSB에 통보했다. 2009년 8월 28일, 관세 행정부 및 관련 기관들은 위 법령 125항을 폐기하였다고 공표하였으며 이러한 새로운 법령은 2009년 9월 1일자로 발효되어 중국은 DSB의 권고 및 판결에 따라 정당한 조치들을 공포하였다.

중국은 폐소 후 원래의 정책은 취소하게 됨으로 인해 한국의 자동차업체들에게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되었지만, 중국 국내 자동차업체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중국 자동차 업체들의 국산화 수준은 비교적 높으며 중국 내에서 생산하는 절대 다수의 기업들은 이미 현지화율이 40%를 상회하는 수준에 도달하였다. 따라서 중국의 조치가 폐지되어도 단지 극소수의 고급 자동차 업체들에게만 영향을 끼칠 뿐이며 일반 자동차 기업에는 거의 영향이 없는 것이다. 관세인하는 고급 자동차에게는 유리하지만 이런 기업들 역시 계속 부품을 국내로 수입하여 조립하는 형태를 취하지 않고 현지화율을 높

65) TRIMs 협정 제5조.

66) 古曉宇·楊開然, "WTO終裁中國敗訴", 京華時報 汽貿爭端, 2008: <http://news.b2b.cn/hyfx/2008-12/182648.shtml>.

이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기 때문이다.⁶⁷⁾

하지만 무엇보다도 초점을 맞추어야 하는 것은 세계의 공장으로 불리우면서 경제 강대국으로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중국이라 할지라도 세계무역질서에 있어서는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중국도 이러한 추세에 발맞추어 서서히 적응해 나가고 있는 것이다. 판정 내용과 관련된 국내 규정을 조정기간의 종료시점까지 개정함으로써 이러한 대열에 합류했다는 것이 긍정적인 평가이다. 또한 시장개방의 약속 이행 부분에서는 상소기구가 패널의 판정을 번복하면서 중국 측의 손을 들어주긴 했지만 엄밀하게 따지자면 해당 위반사항은 시장개방 불이행이라는 범주에 들 수 있는 위반사항으로 지적될 수 있다.

본 사건은 중국이 WTO 가입 이후 불공정무역행위로 패소판정을 받은 첫 사례이다. 상소기구에서 중국의 패소판정이 내려진 이후 2009년 8월 25일 중국은 해당 판정의 내용을 받아들이고 즉각적인 시정조치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문제가 되었던 규정은 2009년 9월 1일자로 해관총서, 국가발전과 개혁위원회, 재정부, 상무부 제125호령 공포로 인해 폐지되었다.

그러나 WTO·TRIMs 협정과 관련한 자동차 부품 관련 규정은 본 사건으로 인해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을 지라도 아직까지 시정되지 않은 각종 제도들이 문제점으로 인식되어지고 있다. 앞에서 언급한 통신업체의 관행으로 인한 국산품 구매, 신철강산업정책을 통한 진출방식의 제한과 해외설비 도입 제한, 개정 외국인투자방향 지도규정의 간접수출요구 등을 구체적인 사례로 들 수 있다. 중국이 세계시장에서 공정한 무역국가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규정들을 WTO 기준에 맞게 시정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해 공정성과 투명성이 확보된 내국민대우를 확보해 주어야 한다. 또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이의 일관된 정책과 규정변화를 통해 통일성을 확보해야 하며 그러한 통일성 확보가 보다 짧은 시간 안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한편 본 연구는 WTO·TRIMs 협정 관련 분쟁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다루어지는 자동차 관련 분쟁을 다루었다는 데에 그 의의를 찾을 수 있으며 중국이 WTO 결정에 따라 고관세조치는 해체하였지만 지속적인 자국산 부품 공급확대를 위한 관세율과 같은 대외적 수단이 아닌 모종의 대내적 방도로 추가조치를 모색할 가능성이 항상 내재해 있기 때문에 관련 규정과 조치의 동향을 파악하여 지속적인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67) 史宝華, “WTO終裁不利 零部件關稅是否有變?”, 21世紀經濟報道, 2008.: <http://business.sohu.com/20080409/n256173674.shtml>.

참고문헌

- 강효백, “WTO TRIMs 협정에 따른 중국의 외국인 투자법제의 개선에 관한 연구”, 「국제법학회논총」, 제49권 제2호, 대한국제법학회, 2004.
- _____, “WTO TRIMs 협정에 따른 중국의 외국인 투자법제의 개선에 관한 연구”, 「통상법률」, 통권 제59호, 법무부, 2004.
- _____, “WTO 무역관련 투자 조치 협정과 중국의 외국인 투자법제에 관한 연구”, 「동북아논총」, 제30권, 한국동북아학회, 2004.
- 김성재, 「주요 수출시장의 비관세장벽(NTBs) 현황」, KOTRA, 2007.
- 김영생, “국제투자규범의 방향과 우리나라의 대응책”, 「기업경영연구」, 제6권, 수원대학교, 1997.
- 김인숙, “WTO 체제상의 TRIMs 규제제도의 문제”, 「통상법률」, 통권 제59호, 법무부, 2004.
- _____, “WTO에서의 투자인센티브 규제와 문제점”, 「통상법률」, 통권 제72호, 법무부, 2006.
- 문준조, 「WTO 가입과 중국의 외국인투자법제정비에 관한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02.
- 백윤수, “무역관계투자조식치(TRIMs)에 관한 UR 협정의 의의와 분석”, 「국제거래법연구」, 제4권 제1호, 국제거래법학회, 1995.
- 법무부, 「UR협정의 법적 고찰(상)」, 1994.
- 심영규, “GATT/WTO 법체제에서의 비차별원칙에 관한 연구 - GATT 1994의 제1조, 제3조 및 제20조 Chapeau를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3.
- 여경송, “TRIMs 협의연구”, 「법학논평」, 제26호, 2001.
- 유창근, “WTO와 OECD의 투자규범”, 「영산논총」, 제1권, 영산대학교, 1997.
- 윤기관, “중국의 WTO 가입 이후 외국인 직접투자전략 변화와 한국기업의 대중국 투자 촉진 방안”, 「무역학회지」, 제28권 제4호, 한국무역학회, 2003.
- 전종윤, “중국의 비관세장벽과 우리의 대응방안”, 「관세와 무역」, 제40권 제3호, 한국관세무역개발원, 2008.
- 古曉宇·楊開然, “WTO終裁中國敗訴”, 京華時報 汽貿爭端, 2008.
- 史宝華, “WTO終裁不利 零部件關稅是否有變?”, 21世紀經濟報道, 2008.
- 聲炯星, 「中外外商投資法問題研究」, 法律出版社, 2001.
- 顧鈺民, 「WTO規則及中國法律的完善」, 同濟大學出版社, 2004.
- Brazil-Certain Automotive Investment Measures, WT/DS51, 30 July 1996/ WT/DS52, 9 August

- 1996.
- Canada-Certain Measures Affecting the Automotive Industry, WT/DS139/R, WT/DS142/R, 11 February 2000.
- Canada-Administration of the Foreign Investment Review Act(FIRA), 7 February 1984.
- George Kleinfeld & Deborah Wengel, "Foreign Investment," *International Lawyer*, vol. 31, 1997, pp. 403~405.
- India-Measures Affecting the Automotive Sector, WT/DS146/R, 21 December 2001.
- Jian Zhou, "National Treatment In Foreign Investment Law: A Comparative Study From A Chinese Perspective", *Touro International Law Review*, No.39, 2000.
- John Parry & Ed Taylor, "TRIMs: United States Accuses Indonesia, Brazil of Violating TRIMs Obligation," *International Trade Daily (BNA)*, in *Westlaw BNA_BT D Database*. (1997).
- Mark Felsenthal, "U.S. Launches Section 301 Investigations against 4 Nations Regarding Cars, Textiles," *International Trade Daily (BNA)* (Oct. 3, 1996)
- M. Mashayekhi & M. Gibbs, "Lesson from the Uruguay round Negotiation in Investment", *Journal of World Trade*, Vol.33, 1999.
- Panel Report on the Indonesia-Certain Measures Affecting the Automobile Industry case. WT/DS54/R, WT/DS55/R, WT/DS59/R, WT/DS64/R, 2 July 1998.
- Philippines-Measures Affecting Trade and Investment in the Motor Vehicle Sector, WT/DS195. 23 May 2000.
- Reports of the Panel on China-Measures Affecting Imports Of Automobile Parts, WT/DS339/R, WT/DS340/R, WT/DS341/R, 2008.
- U.S. "Coercion" of Japanese Automakers Raises Legal Issues, MITI Report Charges, *International Trade Daily (BNA)* (Mar. 31, 1995)
- 중국 상무부 홈페이지(<http://www.mofcom.gov.cn/>)
- 중국해관 홈페이지(<http://www.customs.gov.cn/publish/portal0/>)
- Westlaw BNA-BTD Database(<http://www.lawschool.westlaw.com>)
- WTO 홈페이지(http://www.wto.org/english/tratop_e/dispu_e/dispu_by_country_e.htm)

ABSTRACT

A Case Study on the Violation of the WTO-TRIMs Agreement in the China

-Focusing on the Auto Parts Case-

Jong-Hun Kim*

The purpose of this study aims to analyse the case on the violation of the Agreement on WTO-TRIMs in the China with auto parts case. The Agreement on Trade Related Investment Measures(TRIMs) are rules that apply to the domestic regulations, a country applies to foreign investors, often as part of an industrial policy. The agreement was agreed upon by all members of the WTO. The TRIMs Agreement bans any laws, policies or administrative regulations favouring domestic products. This includes government incentives to encourage corporations to use domestically made products as a way of creating or protecting local jobs. The Agreement on TRIMs is only one such restriction within the broader WTO regime.

Policies such as local content requirements and trade balancing rules that have traditionally been used to both promote the interests of domestic industries and combat restrictive business practices are now banned. In many ways the Agreement on WTO-TRIMs is less significant than the WTO agreements on services, etc. The TRIMs Agreement does not involve any new rules or disciplines, referring only to the existing provisions under the GATT. However, by enforcing GATT provisions on 'national treatment', this short and simple agreement has had farreaching effects on auto parts, etc. Meanwhile, China has been members of the WTO late 2001, once the measures imposed high-rate tariff for import parts was intended to regulate importer of auto parts in order to avoid the high-rate tariff.

Key Words : China, WTO, TRIMs, national treatment, auto parts

* Post Doctor, China National Institute of WTO, The University of International Business and Economics, Beijing, China.